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계종류 신설 및 법무법인등 징계 강화〉

■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26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3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5
1.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상한 신설 등 (안 제90조제3호 단서, 제4호 후단 및 제117조제4항 신설)	5
2. 사건의회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 · 공개 및 병과 근거 등 신설(안 제90조제6호, 제91조제3항 및 제98조의5제3항 후단 신설)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현회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0.
3. 회부연월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외국법

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 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등).

Ⅲ. 검토의견

1.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상한 신설 등 (안 제90조제3호 단서, 제4호 후단 및 제117조제4항 신설)

현 행	전현회의원안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u>다섯</u> 종류로 한다. <후단 신설> 1. 2. (생략) 3. 3년 이하의 <u>정직</u> <후단 신설> 4. 3천만원 이하의 <u>과태료</u> <후단 신설>	제90조(징계의 종류) ----- ----- <u>여섯</u> ----- -----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 <u>정직</u> .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한다. 4. ----- <u>과태료</u> .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

현행	전현회의원안
5.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u>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u> 5.·6.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90조제3호 단서에 따른 업무정지 결정을 위반한 법무법인등에게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제4항까지에----- ----- ----- -----.

- 개정안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안 제90조제3호 후단) 및 과태료 상한(안 제90조제4호 후단)을 신설하고,

법무법인등이 안 제90조제3호 단서¹⁾에 따른 업무정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안 제117조제4항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징계 체계를 살펴보면, 법 제10장에서 ‘징계 및 업무정지’가 규정되어 있음(제90조부터 제108조까지).

구체적으로, 제90조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① 영구 제명, ② 제명, ③ 3년 이하의 정직, ④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⑤ 견책 등 5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제91조에서는 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98조의5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를 집행하는 등 집행

1) ‘후단’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한편, 법 제102조에서는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결정의 결과 중징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법무법인등’에 대한 징계 및 업무정지는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무법인은 법 제57조,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6, 법무조합은 법 제58조의30을 통해 “제10장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10장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제4장(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권리 및 의무규정 전체에 대한 징계 및 업무정지를 준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24조(품위유지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제26조(비밀준수의무), 제31조제2항(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등을 ‘제외’한 규정에 한하여 준용되는 것으로²⁾,

2)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제2판), 정독, 2022, pp. 601-2.

「**변호사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현행 법체계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회칙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음³⁾.

<3년간 개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의 징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건)

연도	징계대상	징계사유						합계	연도별 합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고 규정 위반	사무 직원 신고 의무 위반	퇴직 공직자 활동 내역 제출 위반	기 타		
2023	개인	15	55	32	0	2	28	132	154
	법무법인	3	2	3	0	7	1	16	
	법무법인 (유한)	0	0	0	0	6	0	6	
2024	개인	30	44	51	2	0	31	158	206
	법무법인	2	1	14	4	11	3	35	
	법무법인 (유한)	3	0	1	1	6	1	12	
	공동	0	0	0	0	1	0	1	
2025	개인	16	43	66	4	0	27	156	198
	법무법인	1	3	22	3	3	6	38	
	법무법인 (유한)	0	1	2	0	0	1	4	
2026. 7.말	개인	9	21	6	4	0	14	54	77
	법무법인	0	0	6	0	9	4	19	
	법무법인 (유한)	1	0	0	1	0	2	4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3) 상계서, p. 247. 다만, 실무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등에 대하여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광고규정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무법인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과태료는 법무법인등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등에 대한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5년간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49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3배인 190건이 접수됨.

<5년간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4>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건수	49	59	126	166	190	590

※ 자료 : 한국소비자원

피신청인별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곳의 법무법인에 약 80%가 집중되는 등 특정 법무법인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임.

4)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은 한 사건에 여러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등 거래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있다고 해석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의 필요

<피신청인별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법무법인(유한) A	-	4	12	28	37	81
법무법인 B	3	3	5	24	20	55
법무법인 C	-	-	16	1	1	18
법무법인 D	2	-	2	6	5	15
법무법인 E	-	-	2	3	4	9
법무법인 F	-	-	1	5	2	8
G	1	-	2	2	2	7
합계	6	8	40	69	71	193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이에 개정안은 법무법인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 상한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법무법인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상한 신설 등은 법무법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법률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연인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등은 부과되는 의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징계사유가 동일할 수 없으며, 징계의 종류도

법인격의 개별적 특성에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인인 ‘변호사’를 주된 수범자로 상정하여 마련된 규정을 법무법인등에 준용하도록 하는 현행 법체계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는바,

‘법무법인등’을 수범자로 하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⁶⁾.

- 둘째, 안 제90조제3호 후단의 ‘업무정지’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업무정지는 징계 규정과는 별도로 법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업무정지의 수범자는 ‘변호사’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적 정합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10장 제목은 ‘징계 및 업무정지’로 징계와 업무정지가 구별되어 있어 법무법인등에 대한 업무정지를 규정할 경우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⁷⁾,

현행법상 업무정지는 그 요건으로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

5) 이광수(2017)는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등에게 징계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아무런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징계유형조차 과태료와 견책을 제외하고는 법무법인등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법인등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징계유형을 정비하고 법무법인등과 관련된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입법론이 필요하다고 함(이광수, 「법무법인 등의 징계책임구조」, 『2016 변호사』(제49집), 2017.).

6) 참고로, 일본 「변호사법」은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규정에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에 부합하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7) 참고로, 일본 「변호사법」은 우리 「변호사법」과 달리 업무정지를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요하는 등 일반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무법인등에 대한 업무정지를 신설할 경우 자기책임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징계유형을 정비하고 법무법인등과 관련된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는 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동 법이 아닌 「외국자문사법」⁸⁾ 제35조의32 및 제6장 등에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과 달리 법무조합은 구성원들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단체성을 갖지 않는 조합체⁹⁾로 조합원이 징계사유에

8) 「외국자문사법」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제6장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9) 상계논문, p. 307.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당 조합체에 대해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행법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관하여 제10장(징계 및 업무정지)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¹⁰⁾(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

상기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가 별도의 규정으로 입법화될 경우 각 준용규정을 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다섯째, 과태료 상한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의 일반적 규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의미하나, 과태료는 행정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

10) 「변호사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부당 이득환수 및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의 성격을 지님¹¹⁾).

그런데 개정안은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징금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90조의 징계대상은 “변호사”로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법인 등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업무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인가·승인 등의 주체인 행정관청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변호사법」 제102조도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아닌 징계위원회가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11)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년 개정증보판), 2024. p. 440.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과실 연대책임을 범무법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함.

대한변호사협회는 범무법인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의 신설 및 과태료 상한 상향은 범무법인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합작범무법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외국법 자문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행법 제102조에 업무정지명령제도가 있으나 변호사 개인의 제명가능성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본 변호사법 제57조제2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범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에게는 현행 과태료 상한 규정이 제재 효과가 없는 수준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대폭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2.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공개
 및 병과 근거 등 신설(안 제90조제6호, 제91조제3항
 및 제98조의5제3항 후단 신설)

현 행	전현회의원안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u>다섯</u> 종류 로 한다. <후단 신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신 설>	제90조(징계의 종류) ----- ----- <u>여섯</u> ----- -----. <u>이 경우 제6호의 징계</u> <u>는 다른 징계와 병과할 수 있</u> <u>다.</u> 1. ~ 5. (생 략) 6. <u>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의</u> <u>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u> <u>로의 지정 및 지정사실의 공</u> <u>개.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u> <u>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사건</u> <u>의뢰 주의 대상 법무법인등</u> <u>으로 지정하여 공개한다.</u>
제91조(징계 사유) ① · ② (생 략) <신 설>	제91조(징계 사유)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u>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한</u>

현행	전현회의원안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 ② (생략)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⑤ (생략)	<u>사건수임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처분·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제97조의3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u>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이 경우 제90조제6호에 따른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는 해당 징계처분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공개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6개월 이내의 범위의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공개’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하면서(안 제90조제6호 신설), 해당 징계를 부과하기 위한 사유를 명시하고(안 제91조제3항 신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징계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공개 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5제3항 후단 신설).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요건이 명확성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징계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인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안 제91조제3항은 새로운 징계인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로 ①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② 징계처분·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제97조의3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건수’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징계개시의 신청·징계개시의 청원 또는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징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신청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에서도 징계처분은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3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해 징계정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등) 지정·공개’와 현행 징계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 진정 제도의 취지가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구제명, 제명과 병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주의대상 법무법인등으로 지정하는 징계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고, 안 제91조제3항의 징계사유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징계 수준도 충분한 위하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 제76조¹²⁾에 따라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행법 제76조에 따라 본 회에서 (가칭) 사건 의뢰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그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

12) 「변호사법」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